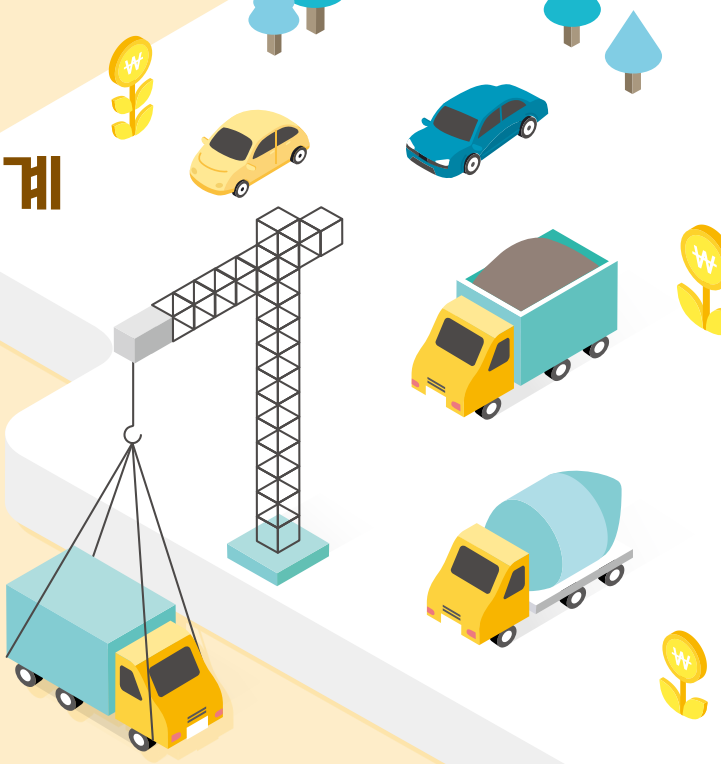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2022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1 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2년 예산(서울시 226억원, 인천시 132억원, 경기도 871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마감은 사업별·지자체별로 상이함

2 사업 종류

연번	사업명	보조금 지원 대상	문의처
1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577-7121
2	경유차 DPF 부착	노후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5등급 경유차	1544-0907
3	PM·NOx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대형 5등급 경유차(버스·화물)	
4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덤프트럭	
5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굴착기, 지게차	
6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1833-6501

3 사업 참여 시 혜택

- **노후 경유차**
  - 운행제한에서 제외(상시,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 **노후 건설기계**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에서 제외

  ※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의 저공해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2020년 1월~)

조기폐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1 조기폐차 사업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율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미만)	3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정액 추가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조기폐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보조금 지급 기준**

구분	기본보조금	추가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시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신차 구매시

※ 단, 중고차 구매 시 최근 2년간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받은 차량 제외

조기폐차 사업 참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1. 차량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2.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5.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로 추가보조금 받은 차주 권고사항

의무운행기간(2년) 중 중고차 매매 시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받은 차량임을 고지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사업 대상

•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 DPF 부착 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가능(장치 반납 필수)

지원액

• 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능!

"조기폐차 지원액 + 200만원"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시 차주 알림 사항

의무운행기간(2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 예정(기간별 20~70%)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1 DPF 부착사업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지원액

- 292만원~632만원(차주부담금 28만원~6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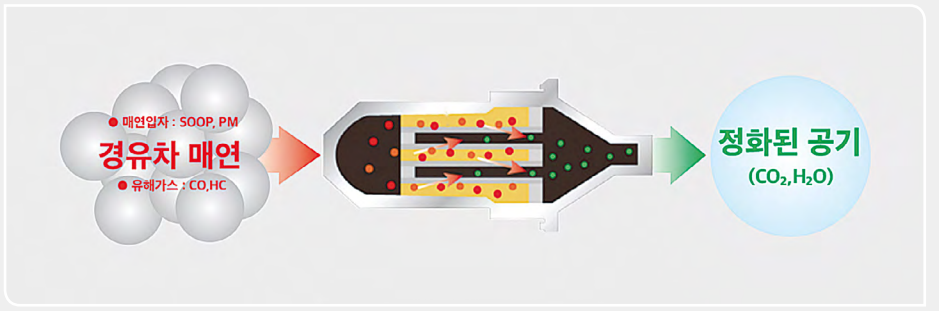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기본보조금			차주부담금
		계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4,002	462	3,540	393
자연중형		3,612		3,150	349
복합대형		6,319		5,857	650
복합중형		4,770		4,308	478
복합 소형	RV, 승합	2,922		2,460	351
	화물	2,992		2,530	281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클리닝 비용 연 1회 무상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원리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2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 및 대형 버스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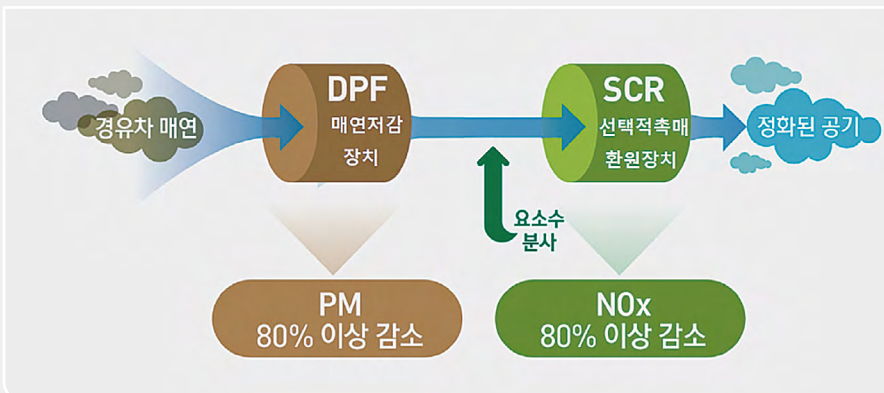
- 1,318만원~1,567만원(차주부담금 10만원~13만원)

(단위: 천원)

구분	기본보조금			차주부담금
	계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13,175	2,262	10,913	100
복합대형	15,665		13,403	13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보증기간(3년) 이내 저감장치 클리닝 3회, 요소수 비용 180만원 무상 지원
* 보증기간 경과 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

PM·NOx 저감장치 원리



건설기계 DPF & 엔진 교체

1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사업 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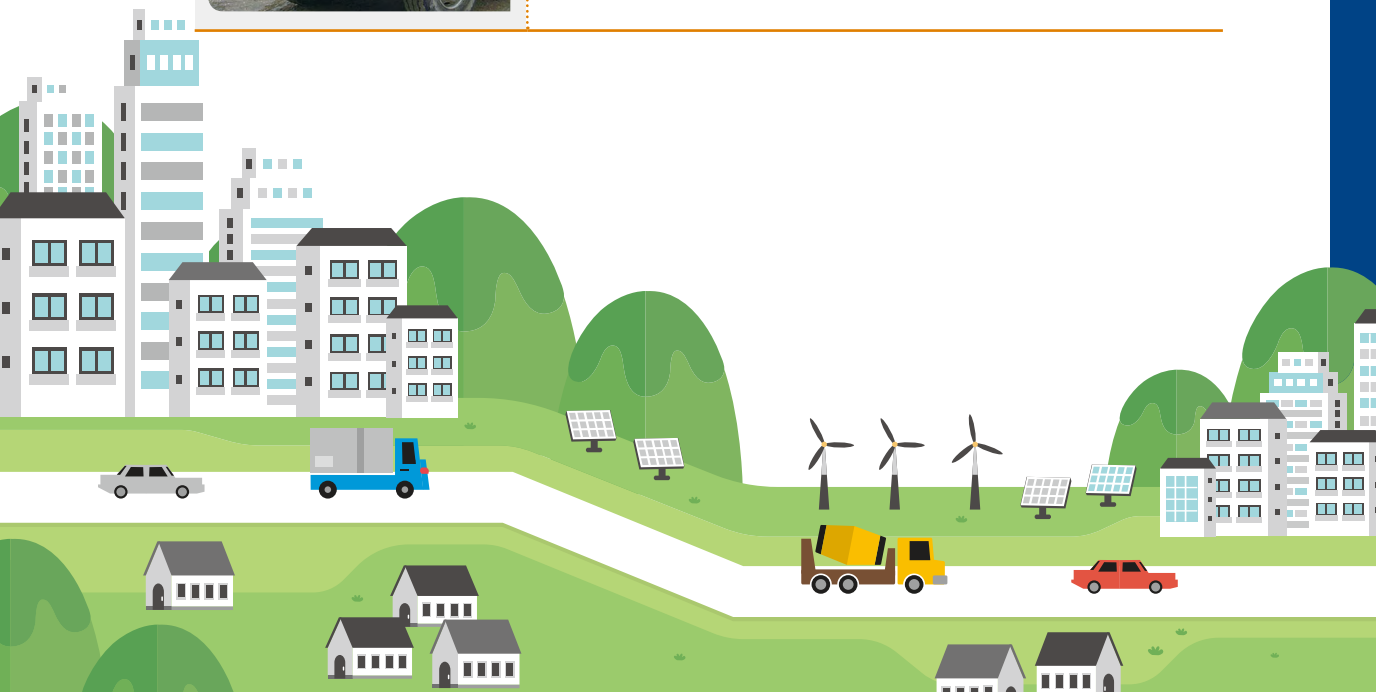
- 525만원~730만원(차주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단위: 천원)

구분	지원액		
	계	유지관리비	장치비
대형	7,296	462	6,834
중형	5,248		4,786

* 저감장치 클리닝 비용 연 1회 무상 지원

덤프트럭	유의사항!
	현재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중단**되었음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두 차량은 지자체에 **유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 출입 가능**함



건설기계 DPF & 엔진 교체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사업 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출력이 75kW(101PS) 이상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 지원액

- 937만원~2,035만원(차주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단위: 천원)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엔진교체 전 매연 배출	엔진교체 전·후 비교	
	교체 전	교체 후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 의무사항**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 받기

- DPF와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보증기간(3년)과 관계없이 연 1회 무상지원)



요소수 주입하기

-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주기적으로 차량 정비하기

- 엔진오일 누출, 연료필터·분사노즐 막힘 여부 등 주기적인 정비 실시
- 자가진단장치(OBD)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음·진동·매연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A/S 신청

저감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등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량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이내 장치 반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반납(사용기간별 20~70%)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 사실 고지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유지관리 의무사항(필터클리닝 등)을 고지

참여 방법



조기폐차 사업 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폐차장 입고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기본보조금 지급	폐차 말소 등록 및 기본보조금 청구	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지자체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구매 및 추가보조금 청구	추가보조금 지급
소유자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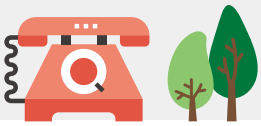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신청	대상 차량 선정	적정 저감장치 안내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차량 및 건설기계 상태 확인
장치 제작사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장치 제작사	지자체

※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및 우편 제출(제출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름)

연락처



1 지자체 및 콜센터

기관(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1, 3654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3~4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42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422-1227
1. 조기폐차	1577-7121
2.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3. 클리닝 및 요소수 지원	1544-0907
4. 저감장치 반납	032-555-5333
대한LPG협회(LPG화물차 신차 구입)	1833-6501

2 저감장치 제작사(A/S 업체)

사업	회사명	전화번호
DPF 부착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에코닉스	1666-3243
	HK-MnS㈜	070-4267-2727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63
	㈜이엔드디	1644-2702
	화이버텍㈜	1588-7617
	후지노테크	031-654-2031
건설기계 DPF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63

사업	회사명	전화번호
PM·NOx 저감장치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63
	㈜이엔드디	1644-2702
	㈜에코닉스	1666-3243
건설기계 엔진교체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HK-MnS㈜	070-4267-2727 1588-7657
	㈜세라컴	1644-5232
	㈜이엔드디	1644-2702
	㈜이알 인터내셔널	1588-8395
	알오씨 오토시스템	031-270-6300

2022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공해 조치
신청하러 가기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TEL 031-481-1380/1389 **FAX** 031-481-1436